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0
------	-----

제출년월일 : 2002. 1. 20.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 요건중
이장 1인당 장학생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불명확한 단어 정정 (제2조)
- 이장자녀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
- 제4조 제2항중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을 삭제한다.

3. 본문 : 붙임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호중 “학내성적이 60/100이상인 자”를 “전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100이상에 해당하는 자”으로 한다.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중 “읍·면간의 균형,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를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내성적이 60/100이상인 자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3.0/5.0 이상인 자("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3점 이상인 자)</p> <p>2. (생략) (신설)</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p> <p>-----</p> <p>-----</p> <p>1. -----</p> <p>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100이상에 해당하는 자 -----</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p>
<p>제4조(선발) 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 간의 균형, 이장 1인당 선발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p>	<p>제4조(선발) ①(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읍·면</p> <p>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p>